

폐업사실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폐업사실이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록번호)	공고내용	비고
조은건설㈜ (손호성)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557-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성2010-9-02) 토공사업 (의성09-02-5) 조경식재공사업 (의성2010-16-02)	폐업 사실 확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업확인 (국토부- 국세청)

3. 공고기간 : 2019. 6. 21. ~ 2019. 7. 9

4.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 읍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대상 업체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시키지 않으며,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대상**이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650-6331 / fax 054-650-6339)

2019. 6. 21.

예 천 군

